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6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김승수・임이자・성일종

신성범 · 김위상 · 김성원

박덕흠 • 박성민 • 주호영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 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분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를 "매개(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언론보도등"이라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쟁 중인 언론보도등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u>매개(이하</u>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한다)를 둔다.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를 포함한다. 이하 "언론보도
	<u>등"이라 한다)</u>
② ~ ① (생 략)	② ~ ① (현행과 같음)